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15-8235호

시행일자 2016. 12. 21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201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세청 원천세과-1271(2016.12.13.)

3.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201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17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이에 붙임과 같이 「2016년 의료비세액공제 안내문」을 송부드리오니,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료비 자료 제출 방법은 국세청 > 홈택스 > 자료실 > 378번 [연말정산간소화] 2016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2016년 의료비세액공제 안내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(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장)